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및 저가 의약품 기준을 상향조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 제3항제2호)
- 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3 기대효과

- 약가제도개편(12.1월)에 따른 저가 필수약품의 원활한 공급도 모 및 제약사 부담 완화
- 약가제도개편(11.1)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27. ~ 2012. 1. 4.)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엠바고: 1.17(화) 국무회의
시작(8시) 후

대통령령 제 호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02-2023-74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24조제3항제3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가목 중 “50원(액상제는 15원)”을 “70원(액상제는 20원)”으로, “500원”을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플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text{구입금액} + (\text{상한금액} - \text{구입금액}) \times 7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엠바고: 1.17(화) 국무회의
시작(8시) 후

신·구조문대비표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02-2023-7425)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엠바고: 1.17(화) 국무회의
시작(8시) 후**

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생략)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 라. (생략)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02-2023-7425)**

1. (현행과 같음)
2. -----

가. -----
----- 70원(액상제는 20원) -----
----- 700원(단위제형
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플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
원) -----

나. ~ 라. (현행과 같음)

**엠바고: 1.17(화) 국무회의
시작(8시) 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생략)
- ④·⑤ (생략)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02-2023-742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엠바고: 1.17(화) 국무회의
시작(8시) 후**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02-2023-7425)**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연 락 처	(02) 2023 - 7425